2025년말 기준 해외대출 현황 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▶ 조사대상 기업들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현황을 파악하여 매분기 공표되고 있는 국제투자대조표 및 대외채권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

2. 조사대상

▶ 2024년말 기준으로 해외대출 잔액이 있는 기업과 2025년 중 신규 해외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

3. 조사내용

▶ **비거주자**에 대해 실시한 **해외 대출**을 통하여 발생한 **채권 잔액** 내역

* 보고단위: 해당통화 (예) 200천유로(X) → 200,000유로(O)

o **해외대출** : 다음의 경우 조사내용에 포함

—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내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실행한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대출금 잔액(지정거래외국환은행,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앞 대부투자 신고필을 득한 경우임)

—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16조에 의거 국내기업이 현지법인(자손회사 포함) 등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금 잔액,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회사 등 외국 비거주자에게 대출한 외화표시 또는 원화표시 대출금 잔액, 및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실행한 여타 경우의 대출금 잔액(지정거래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앞 금전대차신고필을 득한 경우임)

—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 앞으로 실행한 대출금 잔액(금융감독원앞 현지법인금융기관(역외금융회사)등 투자(대부투자의 경우만 해당) 신고(수리)필을 득한 경우임)

*** 대출채권 매매, 무역신용(수출미수금, 수입선급금), 등은 제외**

4. 작성 및 제출

▶ 한국은행 홈페이지(www.bok.or.kr) > 경제통계 > 통계조사표 > 국외투자통계 > "2025년말 기준 해외대출 현황 조사"를 다운로드하여 작성

▶ 작성된 조사표는 **반드시 담당자 직·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E-mail**로 송부(E-mail이 안 되면 경우 팩스나 우편도 가능)

※ 조사표 작성자 앞으로 추후 소정의 기념품 발송 예정

▷ E-mail 주소 : bokiip@bok.or.kr

▷ 팩스: 02) 759-5667

▷ 주소 : (04531)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국외투자통계팀 국제투자대조표 담당자

▶ 제출 기한 : **2026년 3월 31일(화)까지**

▶ 작성 문의 :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국외투자통계팀 (☎ 02) 759-4457, 4690)

< 법적 근거>

▶ **조사표 징구** :「외국환거래법」제20조,「외국환거래규정」제10-3조 제1항,「한국은행법」제86조,「통계법」제26조 제2항 및 제3항

▶ **비밀보장** :「외국환거래법」제22조,「통계법」제33조 및 제34조

※ 관련 법규의 상세내용은 (별첨) 참조

(별 첨)

▶ 조사표 징구의 법적 근거 :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0조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0-3조 제1항
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
「통계법」 제26조 제2항 및 제3항

<외국환거래법>

제20조(보고·검사)

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<외국환거래규정>

제10-3조(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)

①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,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,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나 이에 관련되는 자(이하 이 절에서 "보고당사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보고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.

1.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경우
2. 국제수지, 국제투자대조표(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포함한다) 및 외국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
3. 기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한국은행법>

제86조(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 등)

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·은행업무·재정·물가·임금·생산·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<통계법>

제26조(실지조사 등)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

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▶ **비밀보장의 법적 근거 :**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 및 제26조
「통계법」 제33조 및 제34조

<외국환거래법>

제22조(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) 이 법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·보고·통보·중개(仲介)·중계(中繼)·집중(集中)·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제11조의3제5항, 제20조, 제23조,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<통계법>

제33조(비밀의 보호)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 통계종사자,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▶ **위규시 제재의 법적 근거 :**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2조 제4항
「통계법」 제41조 제4항

<외국환거래법>

제32조(과태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4.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

<통계법>

제41조 (과태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